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통 계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○○○○○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통계자료의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식별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사업체 정보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하고,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통계사무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8조에 따른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가. 통계이용자에 대한 식별형태 통계자료 제공 범위 확대(안 제47조)
현재 총조사 또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작성하는 통계 중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에서 사업체명, 업종, 주소, 전화번호만 식별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통계자료의 이용도 제고를 위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로 식별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
- 나. 민감정보 처리를 위한 법령상 근거 마련(안 제52조의4)
통계사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8조에 따른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

다.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(안 별표 제1호 가목 및 나목)

처분 후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적발된 경우에만 가중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가중처분 위반행위 적용시점을 ‘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’로 명확히 하고,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도록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

대통령령 제 호

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통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7조제3항 중 “상호·업종·주소 및 전화번호”를 “상호·업종·주소·전화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”로 한다.

제5장에 제5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2조의4(민감정보의 처리)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8조에 따른 민감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
2.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
3. 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31조제2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·이용에 관한 사무

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행정자료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8조에 따른 민감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③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8조에 따른 민감정보가 포함된 자료

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총조사에 관한 사무

2. 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
 별표 제1호가목 후단 중 “위반 횟수는”을 “기간의 계산은”으로, “과태료 부과처분을 한”을 “처분을 받은”으로, “후에 같은 위반행위로”를 “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”로, “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”를 “기준으로 한다”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며,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7조(통계이용자의 통계자료 신청과 제공) ①·② (생략)	제47조(통계이용자의 통계자료 신청과 제공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법 제31조제2항2호에서 “사업체 명, 업종,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”란 사업체의 <u>상호·업종·주소 및 전화번호</u> 를 말한다.	③ ----- ----- ----- -- <u>상호·업종·주소·전화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</u> ----- -----.
④·⑤ (생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제52조의4(민감정보의 처리) ① <u>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8조에 따른 민감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</u>
	1.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
	2.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
	3. 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31조

제2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·이용에 관한 사무

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행정자료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8조에 따른 민감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③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8조에 따른 민감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총조사에 관한 사무
2. 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통계청 통계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15 - 2732 (042) 481 - 2426